

[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436(2022.06.08)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 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2020. 6. 12. 위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20. 12.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망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5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상속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위 법이 말하는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은 '수유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출연한 경우 위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그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조세 부과와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유사한 데다, 상속세법령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즉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3자는 '수유자'에 준하는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보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상속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③ 제3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수령한 보험금을 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 내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원고는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상속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1나10607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35026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상속세법 제24조는, 상속세법 제21조에 따른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전부가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금액은 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